

建築法施行令中改正令

(대통령령 제11,740호 1985. 8. 16)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

3.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심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5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200미터이내의 구역

제5조 제1항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수시설(이하 “군수시설”이라 한다)”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동별공사의 완료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군수시설”을 “방산시설”로 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 본문중 “조경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하고, 동호단서중 “조경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범위까지만”을 “조경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으로 한다.

제24조 제목중 “열손실방지조치”를 “열손실방지등을 위한 조치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2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열손실방지를 위하여”를 법 제2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등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하여”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에서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하고 그 구조 및 설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건축

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그 건축허가의 신청이 증축 또는 개축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
3.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숙박시설 또는 병원
4.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 또는 실내수영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같은 건축물안에서는 주택·기숙사·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 시설”이라 한다)중 하나이상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숙박시설등”이라한다)중 하나이상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등 시설과 숙박시설등의 출입구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며,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 및 건축설비등을 할 경우에는 주택등 시설과 숙박시설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게 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구역(1983년 12월 31일 현재 상업지역으로서 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중 하나 이상이 있는 구역에 한한다)에 있어 그 사업의 시

행으로 주택등시설과 당해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기존의 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게 되는 경우

제38조 제2항 본문후단중 “각직통계단은”을 “각직통 계단의 출입구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하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40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객석의 수가 300석이상인 공연장 및 무도유희음식점

제45조중 “(당해통로의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6미터)”를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2미터]”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통로의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 본문중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과 동조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와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②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지하층의 구조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야 하며, 벽두께는 20센티미터이상,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제1항중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를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당해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하

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을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기타이와 유사한 건축설비”를 “기타이와 유사한 건축설비(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로 하며, “건축설비기술사”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로 한다.

제 51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중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사무소의 경우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난방설비를 하는 때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3조에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4대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관광호텔·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경우에는 그 승용승강기중 1대이상은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는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 55조에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500석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경우와 제 5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거나 10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공업무시설·관광호텔 또는 공중변소의 경우에는 1개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대변기를 지체부자유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 55조의 2를 삭제한다.

제 5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6조의 2 (비상급수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건축물) 법 제 22조의 2 제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인접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 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2.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3.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 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제 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0조 (국기게양대의 설치) ① 상업지역안에서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연하여 2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 옥상의 전면중앙 또는 현관의 차양시설에 길이 7미터이상(3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길이 5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거나 그 건축물의 전면지상에 길이 10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화재등 위급한 때에 인명구조용으로 쓰여질 수 있는 구조로 하게 할 수 있다.

제 2장제 7절 에 제 6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1조의 2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관람공간등의 확보) 500석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관람공간을 확보하고, 당해 관람공간에 이르는 통로는 경사로등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당해 공연장 또는 관람장에 설치하는 관람석의 수	당해 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관람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체부자유자의 수
500석이상 1천석미만	3인이상
1천석이상 3천석미만	5인이상
3천석이상 1만석 미만	10인이상
1만석이상	15인이상

제 63조제 2항 본문중 “5분의1이상”을 “6분의1이상”으로 한다.

제 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0조 (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높이는 법 제 41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 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제 101조제 1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전용지역 또는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시공원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한 공원이나 도로·철도·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높이 8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다만, 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상호간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당해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때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상업지역안에서 높이 12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높이(건축물의 높이가 부분에따라 각기 다른 경우로서 높은 부분의 높이가 그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인 경우에는 낮은 부분의 높이를 말한다. 이 경우 낮은 부분의 높이는 12미터이상이어야 한다)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서 0.5미터를 감한 거리의 4배에 12미터를 가산한 높이

3.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높이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다세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나. 동일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다만, 서로 마주보는 당해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외벽에 채광을 위

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인 경우와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 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다만, 서로 마주보는 각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2조제 1항중 각호를 제외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 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제 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도로에 3면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말하며, 제 3호의 경우에는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말한다)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제 1호 및 제 3호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제 2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속 건축물(다음 각호의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 경우와 기존건축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2조제 2항중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에 “관계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것외에”를 삽입하고, 동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7조제 4항제 7호를 제 8호로 하고, 동항에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 2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제 98조제 1항제 3호 단서중 “다만,”을 “다만,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 2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 99조제 2항중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용도변경행위에”로 하고, 동조 제 3항을 삭제한다.

제 101조제 1항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상 1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이나 다세대주택 또는 연면적 330 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의 옥외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 101조제 1항제 3호 라목중 “·배관핏트 및 닥트”를 삭제하고, 동목중 “쿨링타워”를 “냉각탑”으로 한다.

제 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2조 (적용의 특례) ① 시장·군수는 법 제 53조의 7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 2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가지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토지를 굴착할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에 있는 인접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 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② 법 제 3장 내지 제 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 제 53조의 7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당해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될 사

(단위 : 미터)

구 분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주거전용지역안의 건축물	-	1.0이상	0.5이상
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0.5이상	0.2이상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이상	0.5이상	0.2이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2.0이상	1.0이상	0.5이상
공해공장·위험물 제조소·위험물저장소(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	4.0이상	3.0이상
공동주택(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인 경우	-	1.0이상
	다세대주택이 아닌 경우	-	3.0이상(2층이하인 경우에는 2.0이상)
			2.0이상(2층이하인 경우에는 1.5이상)

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구조부·실·설비등의 증축 또는 개축은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 규모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폐율 : 10분의 9이하

나. 용적율 :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다. 대지면적의 기준 :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이상으로서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③ 시장·군수는 법, 이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법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로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제1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제외한다) 및 대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접하게 되는 도로외의 도로에 대하여 제101조제1항제1호단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그 대지안의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 제2장 또는 이 영 제90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여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기준시의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이나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을 증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나. 공장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물,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다.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접하게 되는 도로외의 도로에 대하여 제101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개축·재축 또는 증축(당해 개축 또는 재축으로 인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상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국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이하인 범위안에서 당해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1981년12월31일 이전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에 한한다)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제회의 또는 운동경기등 국가적 행사를 위하여 환경정비가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85조·제86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범위안에서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0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3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독주택·다세대주택(3세대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② 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으로서 부표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것 및 동항 제6호중 부동산중개업소에 한한다)

[별표 2]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연구시설(시설강습소인 경우 기술계강습소, 공장에 부설되는 교육연구시설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④ 공장·기숙사(공장중업원용에 한한다)

[별표 3] 제1항·제8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독주택·다세대주택

⑧ 교육연구시설(시설강습소인 경우 관광·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계강습소에 한한다)

⑮ 농·수산물보관창고

[별표 4] 제11항 내지 제15항을 제14항 내지 제18항으로, 제7항 내지 제10항을 제9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표에 제5항·제8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7항(중전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18항(중전 제15항)중“제14항”을 “제17항”으로 한다.

⑤ 노유자시설

⑦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광업 또는 관광에 관련된 교육연구시설

⑧ 청소년호텔

⑬ 자동차계강습소

[별표 5] 제1항 내지 제17항을 제2항 내지 제18항으로 하고, 동표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제3항(중전 제2항)·제5항(중전 제4항)·제10항(중전 제9항) 및 제11항(중전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14항(중전 제13항)중“150평방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한다.

① 대중음식점(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③ 시설강습소(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되, 대학입시계 시설강습소인 경우 폭 18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⑤ 숙박시설(읍·면의 구역안에서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여관과 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

⑩ 공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폭 8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규모의 2개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⑪ 창고시설(정부양곡보관창고 및 인구 20만미만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용의 창고와 동력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의 촉진 및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자재보관창고로서 읍·면의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6]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규모의 2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별표 7]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장(자동차정비사업장,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규모의 3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별표 8]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교육연구시설, 시설강습소인 경우 기술계강습소, 공장에 부설되는 교육연구시설,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와 직업

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9] 제5항중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을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공장”으로 한다.

[별표 10] 구분란 제1호의 품명란에 제66호 내지 제9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6. 일반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
- 67. 특수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
- 68. 청동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글로우브밸브
- 69. 청동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글로우브밸브
- 70. 청동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앵글밸브
- 71. 청동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계이트밸브
- 72.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 73. 스위치박스
- 74. 암면단열재제품
- 75. 유리면보온재
- 76.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 77. 누전차단기
- 78. 배선용차단기
- 79.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80.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8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 82. 주택용 분전반
- 83. 프리쉬플레이트
- 84. 노오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 85. 박스(경질비닐전선관용)
- 86. 카바나이 프스위치
- 87.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 88. 비닐코오드
- 89.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보울밸브
- 90. 수도용 제수밸브
- 91. 주철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 92. 주철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앵글밸브
- 93. 주철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안나사 게이트밸브
- 94. 주철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 95. 주강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 96. 주강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 97. 주강 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 98. 주강 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 99. 파이트행거

[부표] 제4항제6호중 “소개업소”를 “부동산중개업소등 소개업소”로 하고, 동부표 제7항제1호중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로, “유아원”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하며, 동부표 제 13항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점 :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 4항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와, 동일 건축물안에서 제 4항제 1호의 용도(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와 동항 제 2호·제 3호 또는 제 9호의 용도가 복합되어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主要骨子

가. 中央集中暖房方式으로 된 50世帶 이상인 共同住宅이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業務施設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節約計劃書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의 검토를 거친후 건축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기하도록 함(제 24조제 2항).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로서 여러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로 된 多世帶住宅은 공동주택의 일종이나 공동주택과는 별개의 유형으로 새로이 인정됨에 따라 종래 공동주택의 구조로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엄격한 요건내용을 다음과 같이 緩和하여 규정함.

(1) 避難 및 消火에 대비하여 垜地안에 확보하여야 할 통로의 폭을 3미터에서 2미터로 함(제45조).

(2) 日照權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서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開口部가 향하는 방향에 따른 隣接垜地境界線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독주택의 경우처럼 이를 띄우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제90조제 3 호가목).

(3) 건축물의 주위에 植樹·防火·日照

·通風등에 필요한 공간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隣接垜地境界線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를 3미터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多世帶住宅의 경우에는 1미터이상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처마끝으로부터 인근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를 2미터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多世帶住宅의 경우에는 0.5미터이상 띄우도록 함(제92조제 2 항).

(4) 종전에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미만 돌출부분인 처마·遮陽·附椽등을 인정하였으나 다세대주택의 개념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돌출부분에 폭 1미터미만인 옥외계단을 새로이 포함시켜 이 부분도 건축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01조제 1 항 제 2 호).

(5)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전용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종래 多世帶住宅의 건축이 금지되었으나 이를 새로이 허용함(제66조제 1 항·별표 1 및 별표 3).

다.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며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4 대 이상의 乘用乘降機를 설치하는 의료시설·공동업무시설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중 1 대 이상은 肢體不自由者用 승강기를 확보하고, 500 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관람장의 경우에는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관람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당해 승강기 및 관람공간에 이르는 통로를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제53조제 2 항 및 제61의 2).

라. 1985년 6월 30일 현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되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도 현행법령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앞으로 増築 등을 허용하도록 함(제102 조 제 3 항).

마. 행정관청이 행하는 過怠料의 부과·징수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제103 조).

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각

지역별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추가함.

(1) 住居專用地域 : 3 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 및 부동산중개업소(별표 1)

(2) 專用工業地域 : 시설강습소로서 기술계강습소와 공장종업원용기숙사(별표 2)

(3) 自然綠地地域 : 다세대주택, 시설강습소로서 관광·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계강습소와 수산물보관창고(별표 3)

(4) 生産綠地地域 : 老幼者시설,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 관광에 관련된 교육연구시설, 청소년호텔 및 시설강습소로서 자동차계강습소(별표 4)

(5) 住居地域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이하이고 환경보전법상의 排出施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강습소(대학입시계강습소인 경우에는 폭 18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및 읍·면의 구역안에서 폭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여관(별표 5)

(6) 準住居地域 :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중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排出施設의 시설규모의 2 배 이하인 공장(별표 6)

(7) 商業地域 :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排出施設의 시설규모의 3 배 이하인 공장(별표 7)

(8) 工業地域 : 시설강습소로서 기술계강습소(별표 8)

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大衆飲食店을 추가함(별표 5)

아.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의 품질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일정한 建築材料는 韓國工業規格表示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건축재료로서 종래 65종을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에 34종을 새로이 추가하여 규정함(별표 10).